

# 2023년도 제2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28.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1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95건(안건번호 제2023-141059호~14365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41059호~141062호(순번 1번~4번)는 질문에 대한 답변글로 악보를 게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닌 점, 합법 시장에 동일한 악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악보의 특성상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게시글로 관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41063호(순번 5번)는 블로그를 통해 서적의 스캔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안으로,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업적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41064호~141077호(순번 6번~19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41078호~141081호(순번 20번~23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41082호~141097호(순번 24번~39번)는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로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41098호~143653호(순번 40번~2595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9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1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14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

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165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4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 질문에 대한 답변글에서 악보를 전체 또는 일부 전송하고 있는 사안 총 4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 4건 모두 유사한 악보가 악보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중임.

심의 대상 게시물은 모두 '♣♣♣ ♣♣♣'의 악보 요청 글에 답변글로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전체 분량 또는 일부 전송하고 있다고 해도, 해당 게시글 하단의 광고는 게시자나 답변자와 상관없이 ©©©에서 제공하는 광고이므로 상업적 목적글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고, 사무처 조사 결과로는 합법 시장에 동일한 악보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악보의 특성상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물은 모두 작성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권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4번, '♣♣♣ ♣♣♣'에 게시된 악보 게시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분량과 게시된 공간, 상업적 목적인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부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게시된 기간도 너무 오래되었음. 해당 안건은 부결하고 다만, 요새는 ai를 통해 음악 악보가 완벽하게 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악보를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B 위원: 심의위원회가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해당 건은 부결하는 것에 동의함.
- C 위원, D 위원, E 위원: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4번은 부결하겠습니다.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를 통해 자격증을 위한 전문 서적의 스캔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사안 총 1건임.  
게시자는 서적의 전체 분량을 pdf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지만, 원저작물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신버전이 이미 출간되어 향후에도 재출간될 것이 불명확한 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공유의 목적이 블로그 홍보나 상업적 목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번, '♣♣♣'에 게시된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구판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사안이 애매함.
- C 위원: 민원인이 권리자인지?
- 김선화 선임: 권리자로 볼 만한 사정은 없음. 아닌 것으로 판단함.
- A 위원: 아마도 구 용어에 폐해가 있어서 신 용어로 개정판을 냈을 것임.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구 용어를 별도로 공부하기 위해 아직 수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아마도 출판사에는 추후 구 용어와 신 용어 비교판을 출판할 수도 있겠음.
- C 위원: 전체 분량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판의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한다고 봐야하지 않는지?
- A 위원: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시험을 위해서는 개정판에 있는 신용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 버전은 참고용으로 본다고 봐

야함. 금전적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인은 부결 의견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람.

- B 위원: 해당 서적이 언제 출간된 것인지?
- 김선화 선임: 구 버전이 2004년에 출간되었고, 신간이 2009년에 출간 됨.
- A 위원: 상당히 오래되었고, 학습용 교재이기도 하고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음.
- C 위원: 시판되는 중인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인지?
- 김선화 선임: 신간이 출간되면서 절판되었고, 향후에도 같은 책이 재 출간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B 위원, D 위원: 부결에 동의함.
- E 위원: 경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불법복제물임이 인정되고 합법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댓글 개수로 보아 상당수의 수요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업적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자는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부결 의견 3,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이 2로 해당 안건을 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 내지 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임. PDF 파일은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6번 내지 19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김선화 선임: 이전 회의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게시일자가 안전표에 추가되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 내지 19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번 내지 2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와 웹소설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총 6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 및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0번 내지 23번,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0번 내지 23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4번 내지 39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제공중인 방송 및 영화 등 영상 불법복제물 총 38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4번 내지 39번,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4번 내지 39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0번 내지 259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09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엘리멘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6번은 영화 '엘리멘탈'로, 2023. 6. 14.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영화 '오픈하이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82번은 영화 '오픈하이머'임. 2023. 8. 15. 개봉하여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라이어니스: 특수 작전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28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라이어니스: 특수 작전팀'임. 티빙을 통해 서비스중인 드라마의 6개 회차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40번부터 2595번까지 총 4,096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0번 내지 2595번 중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41059호~141062호(순번 1번~4번)에 대해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141063호(순번 5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41064호~143653호(순번 6번~2595번)는 만장일치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1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4.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